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

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(동거인)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, 아래의 대상자는 **2019. 01. 17.까지**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및 전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동거인 성명 생년월일	주소	신고사항
권**	권** 1970-08-06	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10-17, 104동 901호(마석대림아파트)	비거주
권**	권** 1972-06-24	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10-17, 104동 901호(마석대림아파트)	비거주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,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,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)

담당자 : 김 유 정      문의전화 : 031-590-4858

2019년 01월 02일

화도읍장 (인)

